

의안번호	2202956
의 퇴 인	김용태 의원
회 답 일	2024.09.04.
추계번호	24C297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u>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u> <u>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 <u>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u>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u>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기관의 장</u> <u>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 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 · 감독기관의 장</u> <u>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u> 1) 국가가 설립 ·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 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 3)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복합시설”이란 <u>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 문화 · 복지 · 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u>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의무규정
3	안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제4항)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	재량규정

	운영·관리 원칙)	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비영리법인, 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4	안 제8조 (학생의 안전 확보)	(제3항)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5항)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의무규정
5	안 제9조의2 (학교복합시설 지원센터)	(제1항)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의무규정
		(제3항)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10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²⁾³⁾⁴⁾	미첨부 근거 규정 등
1	안 제5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안 제9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안 제2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가능 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 등이 포함되게 되나, '24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이미 해당 대상들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제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 시설임⁵⁾
- 교육부는 ’23년과 ’24년 공모를 통해 총 80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진행중
- 특히, 안 제2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된 ‘유치원’, ‘대학’, ‘폐교’ 또한 이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음

[표] 유치원, 대학 및 폐교에 설치(예정)인 학교복합시설

구분	지역(광역)	사업명	비고
폐교	부산	부산 감정초등학교	기설치
유치원	경북	울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치 예정
폐교	부산	구)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폐교	경기	(가칭)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폐교	강원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	
폐교	충북	(폐교) 황간중학교	
폐교	충남	홍성군 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폐교	경북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 사업	
대학	군산	지역연계 복합센터	
대학	창원	스포츠·문화콤플렉스 건립사업	
대학	서울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신축	
대학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자료: 교육부

- 2) **안 제6조제4항(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재정변동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참고로 현행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기획·건설 등 현장지원 업무, 연구·자료 개발, 공모지원·자문단·실무협의체 운영, 교육·연수 및 홍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음.
- 3)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운영주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용도 등 성격을 고려하여 **안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례가 있어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표] 학교복합시설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례

구분	설치목적	촬영범위
소래너나들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구, 강의실, 복도, 승강기 등
서연이음터	방법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건물 내부,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복도
동탄중앙이음터	범죄예방 및 시설안내	건물 내부,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 층 복도

자료: 교육부

- 4) **안 제10조의2(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총사업비 중 3,02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출하는 등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하였음
- 5) 교육부 보도자료 (2024.08.09.)

□ (안 제5조의2)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 설치·운영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교육부는 '24년 현재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⁶⁾를 운영중임
 - － 해당 홈페이지에는 학교복합시설 정책 소개, 사업현황, 지도 및 현황 등이 탑재되어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이외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 등이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복합시설 GIS수요분석 시스템’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교육부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공간기반으로 학교와 유사시설 위치, 거리, 개소수, 인구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의 객관적 수요분석이 가능하게 되며,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학급학교 등 관계자들이 시스템 이용이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ISP등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기 전(前)으로 관련 비용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 또한, 교육부가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보가 지원시스템에 추가 구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관련 사항이 교육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안 제9조의2)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방교육청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의 구체적 조직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비용 추계가 어려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6) <https://www.edumac.kr/sc/index.do>

- 다만, 동 조 제4항⁷⁾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조직 규모에 대한 기준, 운영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 예상과 소요비용 가정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7) (안 제9조의2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